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 청 북 도 의 회
건 설 소 방 위 원 회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589
----------	-----

2017. 4. 19.(수)
건설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임순묵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17년 4월 11일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4월 14일

라. 상정일자 : 2017년 4월 19일

(제35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임순묵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인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의 개정에 따른 용어 등을 변경하고, 원인조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에 개정에 따른 용어 등 정비
(안 제1조, 안 제2조,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)
 - “지진피해” → “지진재해”
 - 「지진재해대책법」 →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
 - “피해규모” → “재해규모”
- 원인조사단의 임무 신설(안 제6조)
-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한 지진피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사항 변경(안 제9조)
- 타 시도 지원요청 시 지원 사항 변경(안 제10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김경형)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상위법령인 「지진재해대책법」의 개정에 따라 제명과 용어 등을 정비하고, 원인조사단의 임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제20조에 따라 시·도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 구역의 지진재해원인의 조사·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지역지진재해원인조사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고,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

- 입법예고('17. 4. 4. ~ '17. 4. 9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,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음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

라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원인조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없 음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없 음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를 “충청북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진재해대책법」 제20조에 따른 지진피해”를 “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 제20조에 따른 지진재해”로, “피해가”를 “재해가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지진피해”를 각각 “지진재해”로, “지진재해 원인”을 “원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지진피해 원인조사단”을 “지진재해 원인조사단”으로, “시·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”을 “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”으로, “관련분야”를 “지진재해 관련분야(이하 “관련분야”라 한다)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지진피해 원인조사단원”을 “지진재해 원인조사단원”으로, “전문가로서”를 “전문가로서”로, “지역본부장이 단원으로 임명하여”를 “지역본부장으로부터 원인조사단 단원으로 임명받아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조사단원을 사전”을 “사전”으로, “구성·관리하여야”를 “조사단원을 구성·관리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전문가로”를 “전문가로서”로, “지진재난”을 “지진재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호에”를 “호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학·협회”를 “학회와 협회”로 하며,

같은 조 제4항 중 “피해원인조사”를 “지진재해 원인조사”로 한다.

제6조제1호 중 “피해발생원”을 “재해발생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「지진재해대책법」에 따른 중앙지진조사단”을 “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 제20조에 따른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”을 “제47조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를 제7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시·군 지진재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

6. 지진재해 수습 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

제6조제7호(중전의 제5호) 중 “지시하는”을 “필요하다고 인정하는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지진피해”를 “지진재해”로, “실시 기간”을 “기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피해규모”를 “재해규모”로, “원인조사 기간을 충청북도”를 “충청북도”로, “연장하여 운영”을 “원인조사 기간을 연장”으로 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피해규모”를 “재해규모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현지조사”를 “조사단장은 현지조사”로, “지진피해”를 “지진재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최종 지진피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는”을 “조사단장은”으로, “작성·완료하고,”를 “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”로, “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”를 “제출하여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조사단장은 지진재해경감”을 “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은 지진재해 경감”으로, “추가적”을 “조사단장으로 하여금 추가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

항 중 “지진피해”를 “지진재해”로, “「지진피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」를 작성·발간하고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”를 “「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」를 발간하여야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원인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지진피해”를 “원인조사를 위하여 지진재해”로, “등을 지원하거나”를 “등 필요한 지원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지진피해”를 “지진재해”로, “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”를 “원인조사단의 파견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</u> <u>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</u>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지진재해대책법</u>」 제20조에 따른 <u>지진피해</u> 원인조사단의 구성·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진으로 인한 <u>피해</u>가 발생한 경우 발생지역의 지진재해원인의 조사·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지진예방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지진발생으로 인한 재해의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“<u>지진피해</u> 원인조사” (이하 “원인조사” 라 한다)란 <u>지진피해</u> 발생 시 <u>지진재해</u> 원인의 조사·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. 2. “<u>지진피해</u> 원인조사단”	<u>충청북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</u> <u>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</u> 제1조(목적) ----- 「<u>지진·화산재해대책법</u>」 제20조에 따른 <u>지진재해</u> ----- ----- ----- <u>재해</u>가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--<u>지진재해</u> ----- ----- <u>지진재해</u> -- ----- <u>원인</u>----- ----- -. 2. “<u>지진재해</u> 원인조사단” --

(이하 “원인조사단” 이라 한다)이란 원인조사를 위해 시·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(이하 “충청북도 지역본부장” 이라 한다)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말한다.

3. “지진피해 원인조사단원”
(이하 “조사단원” 이라 한다)이란 지질·건축·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써 충청북도 거주자 중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이 단원으로 임명하여 원인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5조(원인조사단의 구성·운영 등) ①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은 원인조사단을 구성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, 조사단원을 사전에 관할지역 학·협회 등의 산·학·연 전문가로 구성·관리하여야 하며, 별표 1에 따른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조사단원 수를 정할 수 있다.
② 원인조사단의 단장(이하 “조사단장” 이라 한다)은 조

-----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-----
----- 지진재해 관련분야(이하 “관련분야” 라 한다) --.

3. “지진재해 원인조사단원”

----- 전문가로서 -----
-----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원인조사단 단원으로 임명받아-----.

제5조(원인조사단의 구성·운영 등) ① -----

----- 사전-----

----- 조사단원을 구성·관리하여야 -----

-.
② -----

사단원 중에서 실무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로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이 정하고, 간사는 지진재난 대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.

③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.

1. 별표 1의 관련분야 학·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

2. (생략)

④ 조사단장은 피해원인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시설에 부합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원인조사단을 구성·운영한다.

제6조(원인조사단의 임무) 원인조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.

1. 지진발생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원인 조사·분석에 관한 사항

2. (생략)

3. 「지진재해대책법」에 따른 중앙지진조사단의 기술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

----- 전문가로서 -----
----- 지
진재해 -----
-----.

③ ----- 호의 -----

-.

1. ----- 학회와 협회

2.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지진재해 원인조사

-----.

제6조(원인조사단의 임무) -----

-----.

1. ----- 재
해발생원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3.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
제20조에 따른 중앙지진재해
원인조사단과-----

4.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따른
중앙합동조사단의 기술지원에
관한 사항

<신 설>

5. 그 밖에 충청북도 지역본부
장이 지시하는 사항

<신 설>

제7조(원인조사 시기) ① 충청북
도 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 시설
물 위험도 평가단의 운영 시기
를 감안하여 원인조사 실시 기
간을 정한다.

② 조사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
지여건을 감안하여 원인조사 기
간을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의 승
인을 얻어 연장하여 운영할 수
있다.

제8조(현지조사) ①·② (생 략)

③ 현지조사 시 조사단장은 피
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
여 원인조사장비·인력 등의 증
감 사항을 충청북도 지역본부장
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4. -----제47조에
따른 중앙합동조사단과-----

5. 시·군 지진재해 시설물 위
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

7. -----
필요하다고 인정하는 --

6. 지진재해 수습 지원 및 자문
에 관한 사항

제7조(원인조사 시기) ① -----
----- 지진재해 -----

----- 기간-----.

② ----- 재해규모 -----
----- 충청북도 -----

원인조사 기간을 연장--.

제8조(현지조사) ①·② (현행과
같음)

③ ----- 재해규
모-----

--.

제9조(원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) ①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별지1의 양식에 따라 지진피해 원인조사 초동보고서를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최종 지진피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는 별지2의 양식에 따라 원인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·완료하고,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전부와 함께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중점 연구 또는 추가 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조사단장은 지진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·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연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.

④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원인조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「지진피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」를 작성·발

제9조(원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) ① 조사단장은 현지조사-----
---- 지진재해 -----

-----.

② 조사단장은 -----

-----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-----
----- 제출하여야 ----
----- . -----

-----.

③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은 지진재해 경감-----

--- 조사단장으로 하여금 추가적-----.

④ ----- 지진재해 -----

- 「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」를 발간하여야 -----

간하고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
하여야 한다.

제10조(타 시·도 지원 및 지원요
청 등) ① 충청북도 지역본부장
은 신속한 원인조사의 실시를
위하여 지진피해가 없는 인근
시·도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
조사단원 및 기자재 등을 지원
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.

②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은 지진
피해를 입은 인근 시·도 지역
본부장으로부터 원인조사에 관
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
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
야 한다.

-----.

제10조(타 시·도 지원 및 지원요
청 등) ① -----
---- 원인조사를 위하여 지진재
해-----

---- 등 필요한 지원을 -----
-----.

② ----- 지진재
해-----

----- 원인조사단의 파
견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
있다.

관 계 법 령

[지진·화산재해대책법]

제20조(지진·화산재해 원인조사·분석 및 재해원인조사단 구성·운영 등) ①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필요하면 지진·화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지진·화산재해 원인과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·분석 및 평가를 할 수 있다.

<개정 2013.8.6., 2015.7.24.>

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지진·화산재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·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지진·화산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포함하는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 및 중앙화산재해원인조사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<개정 2013.8.6., 2015.7.24.>

③ 국민안전처장관은 국외에서 대규모의 지진·화산재해가 발생하면 지진·화산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외지진재해원인조사단 및 국외화산재해원인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.

<개정 2013.8.6., 2015.7.24., 2017.3.21.>

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, 중앙화산재해원인조사단, 국외지진재해원인조사단 및 국외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5.7.24.>

⑤ 시·도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진재해원인의 조사·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지역지진재해원인조사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고,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<개정 2013.8.6., 2015.7.24.> [제목개정 2015.7.24.]